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본조례에서의 불균일과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므로서

실효성 상실

나. 주요골자

○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3 제1항 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은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의 일반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으로 하여 일반건물의 7.5 배를 중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 1세대가 구분독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든 전체 건축물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여왔음.
-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이 '92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케됨으로서 본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